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14.1.29>

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30일

신청인	회사명(기관명)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법인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
	측정기관 소재지	

「담배사업법」 제25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기획재정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	1.「담배사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 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·검사기관인정서 사본 1부 2.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1부 3.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1부 4.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1부	수수료 없 음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	→	결 재	→	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서 교부
신청인		처 리 기 관 : 기획재정부 담배업무 담당 부서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